

## 【 9 】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2001. 11.

## 제 출 자 양 주 구 수

## 1. 개정이유

근로기준법 개정(2001. 8. 14, 법률 제6507호)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(2001.10. 31, 대통령령 제17399호)으로 일반 민간기업 및 국가직 여자공무원의 출산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우리군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출산휴가를 연장하여 충분한 휴식으로 모자 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.

## 2. 주요 골자

- 가. 공무외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이 제26조의2에서 제25조의2로 개정('97. 2. 24 조례 제1606호) 되었음에도 인용조문을 정비하지 않아 개정함(안 제19조)
  - 나.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제정(2000. 6. 23)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함(안 제22조제5호)
  - 다.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기를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함(안 제23조제2항)

양주군조례 제 호

##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

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 단서중 “제26조의2”를 “제25조의2”로 한다.

제22조제5호중 “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”를 “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”로 한다.

제23조제2항중 “60일”을 “90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